#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2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박광온 · 김승원 · 정필모

김영배 • 이장섭 • 임호선

이탄희 • 고영인 • 김진표

오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고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청년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아 임금 수준이 낮음에도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 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 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못하고 퇴직한"을 "못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퇴직한 근로자"로, "같은 항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로,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이하 "재직근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에는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2. 임금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을 것
- 3. 사업주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것
- ⑨ 제8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각호의 금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 ① 재직 중 제8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직 중 제8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재직근로자의 기준, 채당금의 상한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체당금 지급의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일부를 우선 지 급할 수 있다.
  -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일 것
  - 2.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3. 임금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우선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의 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③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우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체당금에서 우선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는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하거나"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 을 각각 "제7조,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에"를 "제7조 및 제7조의 3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중 "제7조에" 를 각각 "제7조·제7조의3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 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근로자에게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결정·판결 등이 있거나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제1조(목적)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	
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	<u>못한</u>
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	
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	
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호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 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u>제4호</u>에 따른 체당금의 상 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2. (생략)

③ <u>근로자</u>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
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
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u>제4호 및 제5호</u>
1.・2. (현행과 같음)
③ <u>퇴직한 근로자</u>
<u>같은 항 제4호 또</u>

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u>근로자</u>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u>근로자</u>가 제1항에 따라 체 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 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 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u>근로자가</u>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
  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

<u>는 제5호</u>	
	- <u>제1항제4호</u>
또는 제5호	
4	
퇴직한 근로자	
⑤	
<u>퇴직한 근로자</u>	
<u></u>	<u>퇴직한</u>
근로자가 제5항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⑦ (현행과 같음)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2. 임금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을것
- 3. 사업주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것
- ⑨ 제8항에 따른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호의 금액은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 ① 재직 중 제8항에 따른 체당 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신 설>

<신 설>

휴업기간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제당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 직 중 제8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 ① 제8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 대상 재직근로자의 기준, 채당 금의 상한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3(체당금 지급의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
  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일 것
  - 2.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3. 임금등의 체불이 발생하였을 <u>것</u>
  -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우선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고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u> <u>7조</u>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 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 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 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 ② (생략)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u>제7조</u>에 따라 미 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 수한다.

② ~ ⑤ (생 략)② ~ ⑤ (현행과 같음)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

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의 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
당금을 우선 지급받은 경우에
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체당금에서 우선 지급받
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u>제</u>
<u>7조 및 제7조의3</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u>제</u> 7조 및 제7조의3
② ~ ⑤ (현행과 같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u>근로</u> 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u>체불 임금</u>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 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 단에 발급할 수 있다.

# ③ (생 략)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제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근로자
는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청구
하거나
체불
<u>임금등·사업주 확인서</u>
②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
<u> 상보험법</u> 제10조에 따른 근로 <u> 복지공단</u>
<u>복지공단</u>
<u>복지공단</u>  ③ (현행과 같음)
<u>복지공단</u>
<u>복지공단</u>  ③ (현행과 같음)
복지공단  ③ (현행과 같음)   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복지공단
복지공단 
복지공단 
복지공단 

#### ② (생략)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7조 및</u>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 ④ (생 략)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 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제7조, 제7
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
<u> </u>
· ②제7조, 제
<u> </u>
<u>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u>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금의 설치)
<u>제7조 및 제7조의3</u>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 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 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 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 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 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11. (생략)
- ②·③ (생 략)
-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제232	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
조	요청) ①				
제7	'조 및 :	제7조의	<u> 13에</u>		
	,				
1.		(현행고		-)	
	• ③ (ই				
제282	조(벌칙)	1 1			
				A) O P	
		제7조 •	제7조	<u>.의3에</u> -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한 자
- 3.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부당하게 <u>제7조에</u> 따른 체당 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 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 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자

2
- <u>제7조ㆍ제7조의3에</u>
3. (현행과 같음)
②
<u>.</u>
1 <u>제7조·제7조의3에</u>
2
<u>제7조·제7조의3에</u>